

종합거래계좌약관 신규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	비고
<p>제 14조 (면책사항등) ①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--- 이하 생략--- ④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입출금(고) 등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.</p>	<p>제 14조 (면책사항등) ①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--- 이하 생략--- ④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입출금(고) 등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회사는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.</p>	금융투자협회 약관 검토의견 반영 (2024.8.28개정)
<p>제 20 조 (거래제한) ①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, 회사는 계좌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, 해당 계좌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 20 조 (거래제한) ①계좌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, 회사는 계좌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, 해당 계좌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	금융투자협회 약관 검토의견 반영 (2024.8.28개정)
<p><신설></p>	<p>부칙 이 약관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